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(윤준병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917

발의연월일: 2021. 3. 19.

발 의 자 : 윤준병 · 김성주 · 김수흥

김윤덕 • 안호영 • 양정숙

오영환 • 위성곤 • 이용빈

최종윤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시·도별 지역구시·도의원의 총 정수를 그 관할구역 내자치구·시·군 수의 2배수로 정하되, 인구·행정구역·지세·교통,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100분의 14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, 시·도의원의 정수를 정할 때 각 시·도의 행정구역 등이고려 대상이 됨에 따라 인구수와 의원정수 간 비례가 맞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. 실제, 올 2월 기준 인구수 180만 1,319명인 전라북도의 광역의원 수는 39명인 것에 비해 전라북도보다 인구가 26만명이적은 154만 875명인 강원도의 광역의원 수는 47명으로 8명이 많아 시·도별 인구수와 의원정수 간 불비례성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.

이에 인구가 더 많은 도의 의원정수가 인구가 더 적은 도의 의원정

수보다 작아 이를 보정·완화하기 위하여 조정하는 경우 100분의 2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, 이외에는 인구·행정구역·지세·교 통 등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100분의 14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 록 해 광역의원정수에 관한 지역별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(안 제22 조제1항). 법률 제 호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2조제1항 본문 중 "인구·행정구역·지세·교통,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100분의 14의"를 "다음 각 호에 따른"으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인구가 더 많은 도의 의원정수가 인구가 더 적은 도의 의원정수보다 작아 이를 보정·완화하기 위하여 조정하는 경우 100분의 20 2. 제1호에 따른 조정 외에 인구·행정구역·지세·교통 등 그 밖의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조건을 고려하여 조정하는 경우 100분의 14

제2조(시·도의회의 의원정수에 관한 적용례)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임기만료에 따른 시·도의회의원선거를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2조(시・도의회의 의원정수)	제22조(시・도의회의 의원정수)
① 시·도별 지역구시·도의원	①
의 총 정수는 그 관할구역 안	
의 자치구ㆍ시ㆍ군(하나의 자	
치구ㆍ시ㆍ군이 2 이상의 국회	
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국	
회의원지역구를 말하며, 행정구	
역의 변경으로 국회의원지역구	
와 행정구역이 합치되지 아니	
하게 된 때에는 행정구역을 말	
한다)수의 2배수로 하되, <u>인구</u>	<u>다음</u>
·행정구역·지세·교통, 그 밖	<u>각 호에 따른</u>
의 조건을 고려하여 100분의 1	
<u>4의</u>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.	
다만, 자치구・시・군의 지역구	
시·도의원정수는 최소 1명으	
로 한다.	<u>.</u>
<u><신 설></u>	1. 인구가 더 많은 도의 의원정
	수가 인구가 더 적은 도의 의
	원정수보다 작아 이를 보정ㆍ
	완화하기 위하여 조정하는 경
	<u>우 100분의 20</u>
<u><신 설></u>	2. 제1호에 따른 조정 외에 인

	<u>구·행정구역·지세·교통 등</u>
	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조
	<u>정하는 경우 100분의 14</u>
② ~ ④ (생 략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